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236 발의연월일: 2022. 9. 5.

발 의 자: 강득구·강민정·김남국

김수흥 · 김승남 · 김영호

김철민 • 민병덕 • 박찬대

양경숙 · 양향자 · 이동주

이수진(비) · 이용빈 · 이원욱

정춘숙 · 최강욱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생의 교육을 위한 제반 사항이 정해져 있음. 이에 따라 제18조에서는 학생의 징계의 원칙과 방식을 정하고 있음. 현재 교육에 있어서 징계 절차 외에도 교육적으로 필요한 '지도'의 권한이 교원에게 필요하다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제18조제1항에서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이미 밝히고 있는바 징계와 '지도'의 개념을 분리・확장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교육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하고자 함.

이에 제18조를 "학생의 징계 및 지도"로 개정하고 학교와 교원의

'지도'에 대한 권한을 징계와 구분하여 교육적인 지도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8조).

법률 제 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제목 "(학생의 징계)"를 "(학생의 징계 및 지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를 "징계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제18조(학생의 징계 및 지도) ①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학생을 <u>징계하거</u>	<u>징계할 수 있</u>
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u>다</u>
<u>수 있다</u> . 다만, 의무교육을 받	
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
	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을 지도할 수 있다.